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
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변창흠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택시공영차고지,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는 한편,

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아목 시설의 종류란 중 “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”을 “수목원,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”으로 하고, 같은 목 나) 중 “「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목원”을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목원·정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3호머목나) 중 “휴게실 및 대기실”을 “휴게실, 대기실,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”로 하고, 같은 호 서목나) 중 “휴게실 및 대기실”을 “휴게실, 대기실,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”로 한다.

별표 1 제5호다목다)① 중 “철거”를 “철거(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것으로 본다)”로 하고, “토지를 말한다”를 “토지를 말한다. 다만,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”로 한다.

별표 1 제5호라목다) 중 “철거”를 “철거(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

장·군수·구청장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것으로 본다)”로 하고, “토지를 말한다”를 “토지를 말한다. 다만,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”로 한다.

별표 1 제5호마목10)라) 중 “이 경우”를 “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은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별표 1 제5호다목다)① 같은 표 제5호라목다)에 따라 주택,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자는 존치하는 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를 전·답·과수원,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존치하는 주택,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5호다목다)①, 같은 표 제5호라목다)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45